해외출장보고서 2017. 8 .16~ 2017 8. 19 . 일본/도쿄

# 일본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전문가 자문(일본의 JFTC와 대학을 방문하여 최근 경쟁정책의 변화방향에 대한 자료 수집 )

2017. . .

박양신(기업생태계연구본부, 부연구위원)



# Ⅰ. 출장개요

1. 출 장 자 : 박양신

2. 출장기간 : 2017. 8.16.(수) ~ 2017.8.19.(토) (3 박 4 일)

3. 출 장 지 : (일본/도쿄)

4. 출장목적 : 일본 경쟁정책 및 플랫폼 전문가 자문

## Ⅱ. 세부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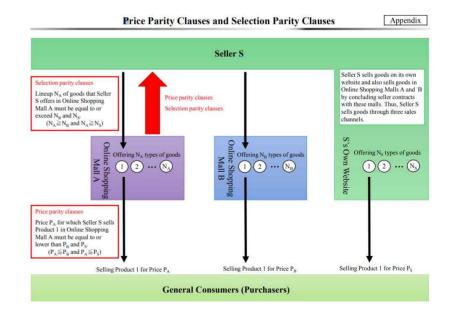
일자 (요일)	장소	시간	주요 일정 (방문기관, 면담자 등)	
8/16	도쿄		서울 출발-> 도쿄 도착	
			University of Tokyo 방문 및 자문	
	도쿄		Japan Fair Trade Commision	
8/17			Competition Policy Research Center	
			방문 및 자문	
8/18	도쿄		Hitosubashi University 방문 및 자문	
			(Prof. Yamamoto)	
8/19	도쿄		도쿄출발 -> 인천공항 도착	

- 1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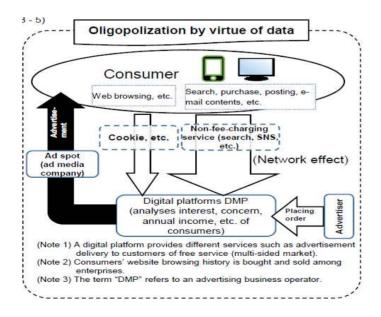
### Ⅲ. 출장 수행내용

- 1. ICT와 디지털화의 확장으로 인해 플랫폼 타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
  - □ Amazon Japan의 반독점법 위반 케이스
  - 면담자: Hitosubashi Unv. Prof. Yamamoto
  - 장소: Hitosubashi 대학 내 교수 오피스
- Japan fair trade commission은 Amazon Japan G.K.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의 판매자들과의 계약(CONTRACT)중에 price parity clauses와 selection parity clauses를 포함하는 등으로써, 판매자의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반독점법상 조사를 실시 (2016년 5월)
- 이에대해, JFTC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Amazon Japan이 자발적으로 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받아들여 2017년 6월 조사를 종료함.
  - Price Parity Clauses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
  - 판매자(seller)의 가격경쟁 및 상품 라인법 등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제약
  -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운영자가 경쟁적인 노력없이 상품의 라인업의 다양성과 가장 낮은 가격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시장에서 의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
  -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운영자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고 새로 운 진입자를 방해

- 이와 유사한 사례로 애플의 iBookstore와 Amazon의 e-book 판매 계약 케이스, Booking. com 케이스가 유럽에서 발생
- ebook cases: 독일, 프랑스는 경쟁플랫폼과의 계약을 의미하는 wide APPA 만 제약, 자체 리테일 플랫폼과의 계약을 의미하는 Narrow APPA는 허용
- Booking.com의 호텔예약 케이스는 영국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웨덴은 wide APPA는 금지하되, narrow APPA는 허용함. 또한, 독일의 경우에는 wide APPA 뿐만 아니라 narrow APPA도 금지하고 있음.



- □ Competitive situation surrounding Data (2017년 6월 JFTC)
- O Digital Platform의 빅데이터 축적 및 활용과 경쟁환경에 대해 일본 JFTC는 연구를 통해 2017년 6월 반독점법상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저해하는 빅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가요구된다고 밝힘.
  - IoT, AI의 발전으로 인해 개선된 데이터 이용능력은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고, 소비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빅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은 그 자체로는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창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.
  - 단, 데이터에 대한 unjust collecting은 경쟁을 제한하며 독점 혹은 과점 사업자에 의한 unjust data hoarding 가능성을 경계



- (빅데이터 활용 급증)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소비자의 website browsing history 등에 대한 개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축적하며 활용하고 있음.
  - 208년에서 2012년까지 데이터 관련 합병 케이스가 거의 3배 증가함(OECD)
  - 플랫폼 상의 네트워크 효과가 빅데이터에 대해 신규 진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.
  - \*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서비스 증대-> 데이터 축적 가속화 과정
  -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합병 케이스 참고(EU)
- 데이터 축적과 비즈니스의 결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케이스 발생우려
  - 이러한 비즈니스 결합이 Al 기술 등으로 인해 경쟁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경제
  - 소비재 시장의 경쟁과 무관하게, 테이터 시장에서 이러한 비즈 니스 결합은 데이터의 가격을 상승시키며, 경쟁을 감소
  - \* 1) 데이터 collection 채널이 제한적일 경우
  - 2) 디지털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가 데이터와 기술로 인한 재 화와 서비스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
  - \* 예: 데이터 시장 -> AI 기술 시장 -> 재화 시장

Car running data -> AI for automated driving -> 자율주 행자동차

- 쇼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무료 서비스가 데이터 시장을 형 성한다는 점에서 반독점 상에서 처리 문제

- \* 개인정보에 대한 비가격경쟁의 경우에 (SNS 시장), 페이스북의 합병과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즈니스의 Privacy policy 변화에 대한 제약조건 필요
-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역 외에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독점상에 서 처리할 필요
- 2. 일본의 leniency program(JFTC Leniency Program 제공)
  - □ Antimonopoly Act위반에 대한 Legal measures

Legal Measures						
	Conducts	Legal Measures				
		cease and desist order				
	Private Monopolization	surcharge payment order				
		criminal accusation				
	Unreasonable Restrainting of Trade (Price Fixing cartel/ Bid-rigging, etc)	cease and desist order				
		surcharge payment order				
	(Frice Fixing Carter Bid-rigging, etc)	criminal accusation				
	unfair trade practices	cease and desist order				
	unran trade practices	surcharge payment order				
	Anticompetitive merger	cease and desist order				

- O surcharge calculation rates
- 카르텔과 Bid-rigging의 경우: 금액= 위반기간동안의 매출액(3년이 최대) \* surcharge calculation rates

normal	repeated violation/	early termination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			entrepreneur	
	manufacturing	10%(4%)	15%(6%)	8%(3.2%)
	retail	3%(1.2%)	4.5%(1.8%)	2.4%
Ī	wholesale	2%(1%)	3%(1.5%)	

\*괄호안은 중소기업의 경우

- "early termination"은 2년이내의 불법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조사 시 작 한달 이전에 행위가 종료된 경우
- "repeated violation"은 조사 시작전 10년의 기간동안에 과징금이 부여된 케이스가 존재할 때
- "leading entrepreneur"은 임찰담함이나, 카르텔의 "organizer" 와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기업을 의미
- 2005년 개정 이후 과징금의 법정부과율을 기존 6%에서 10%까지로 대폭 상향 조정
- 미국 20%. EU와 영국은 30%
- 피해액 산정기준으로서의 '관련매출액'이 사용되고 있으며, 현재 국 제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기준임
- 지난 5년동안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수
- 2012년: 카르텔(1), 입찰담합(19)
- 2013년: 카르텔(8), 입찰담합(9), 그 외(1)
- -2014년: 카르텔(5), 입찰담합(2), 그 외(3)
- -2015년: 카르텔(2), 입찰담합(5), 그 외(2)
- -2016년 카르텔(1), 입찰담합(8), 그 외(2)
- 일본의 경우 담합과 독점행위를 대상으로만 과징금제도를 설계
- -한국의 경우와 비교연구 필요
- 일본에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게된 배경(2006년 도입, 2010년

#### 개정)

- 기업들에대한 self-report 할 유인이 없었음
- 카르텔을 detecting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
- 미국. EU에서 이미 도입된 상황

#### ○ 리니언시 제도

- JFTC 조사 전: 첫 번째 기업(NO criminal accusation)은 100% 면제, 2번째는 50% 감면, 3~5번째는 30% 감면
- JFTC 조사 후: 세 번째 기업까지 30% 감면(조사 시작 후 20일 이내)

#### ○ 리니언시 제도 시행 후

- 2006년 시행이후 JFTC 가 cease and desist order를 내린 카르텔 케이스의 80%정도가 리니언시 어플리케이션이 제출됨
- 최근 크거나/ 국제적인 카르텔 케이스가 리니언시 제도에 의해 밝혀짐.(2012년 auto parts cases, 2014년 국제 ocean shipping cases)
  - 2016년 124건의 어플리케이션 제출

## IV. 출장의 성과(또는 시사점)

○ 위와 같은 출장 수행을 통해, 최근 일본의 경쟁정책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,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AI 도입, 플랫폼 시장의 성장등에 대한 경쟁정책 적용 방법에 일본 정부의 노력과 개선방향을 대한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음.

- 1. ICT와 디지털화의 확장으로 인해 플랫폼 타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
- EU의 APPA, price parity clauses는 양면시장 내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(판매자)와의 수직적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독점 행위로 인식 가능
- 특히,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 (manufacturer) 보다 bargaining power를 획득하게 됨으로써, 계약 조건 상에 위와 같은 거래 조건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음
-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아마존, 애플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함.
- 이는 장기적으로 공급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견지
- 이 경우, 시장지배력 판단을 위한 시장획정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함.
- 근본적으로 소비자를 고착하기 위한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감소시키며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
- \* 경쟁적인 플랫폼 시장의 경우, 이러한 문제 발생가능성이 낮음.
- 특히,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빅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이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.
- 최근 페이스북의 합병 케이스는 빅데이터도 기업의 시장지배력의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
-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의

활용이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data hoarding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

-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역을 넘어 반독점법 상에서 논의 될 필요
- 특히, 빅데이터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 관점 에서 살펴볼 필요
- 2. 일본의 리니언시 제도
- 일본의 리니언시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현 제도를 검토
- 특히, 카르텔 detection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자진신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이 요구됨.
- 과징금 체계, 리니언시 대상, 정보유출 위험 등에 대해 해외와의 국 제 비교의 필요성

# V . 참고자료

※ 발표자료, 출장관련 사진, 행사관련 자료 등 첨부